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명확화 〉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2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명확화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17.
- (3) 회 부 일 : 2025.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급식·진료·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명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결정 등을 위한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안 제17조제3항),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는 매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퇴소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며, 퇴소결정을 통보받거나 입소자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를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주거지원)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

현행	개정안
3. ~ 5. (생략) ② (생략)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 퇴소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 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 여 <u>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u> <u>수 있다.</u> ④·⑤ (생략) <u><신설></u>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 퇴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두</u> <u>어야 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노숙인복지시설 퇴소</u> <u>의 기준·방법·절차) ① 노숙</u> <u>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복지</u> <u>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이하</u> <u>“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u> <u>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지</u> <u>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u> <u>악하여야 한다.</u> <u>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u> <u>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u> <u>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u> <u>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u> <u>고 해당 입소자의 퇴소심사를</u>

현행	개정안
	<u>요청하여야 한다.</u> <u>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이하 “폭행등”이라 한다)를 행한 경우</u> <u>③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폭행등이 반복될 위험을 방지하고 폭행등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해당 입소자를 폭행등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소자에 대한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이하 이</u>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생략)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퇴소심사가 요청된 입소자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¹⁾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퇴소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법률에서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21조²⁾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5조³⁾에서 사회복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소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심사를 요청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①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장래비용 추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①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하도록 하고 있고, 퇴소결정을 통보받거나 노숙인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노숙인 등의 전원 대상이 되는 다른 사회복지시설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량사항이었던 입소·퇴소심사위원회⁶⁾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퇴소결정을 통보받거나 입소자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입소자를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노숙인복지시설의 정·현원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정원은 현원 대비 3,000명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노숙인들을 수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입소자의 경우에는 퇴소심사를 통해 퇴소시키고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노숙인들을 입소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 호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p.12 참고자료 참조

< 노숙인생활시설 입소 현황 >

(’24. 12. 31. 기준, 행정조사)

구분	시설 수(개)	입소자(명)	
		정원	현원
합계	98	9,522	6,519
재활시설	31	3,936	2,656
요양시설	23	4,094	2,749
자활시설	44	1,492	1,114

자료: 보건복지부(행정조사)

□ 또한,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성범죄의 경우 최근 5년간 4건 정도 발생하여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가해자에 대하여 퇴소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의 폭행 또는 성범죄 사례 >

구분	2020년	2021년~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	4건*	-	-

* 생활인 간 원치 않는 접촉, 이용인 간 성적학대 및 성추행 등

** 자료: 보건복지부(인권실태조사 결과 기준)

□ 개정안은 폭행등을 행한 노숙인에 대하여 입소·퇴소심사위원회가 퇴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즉시 해당 입소자를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전원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시설 환경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취약계층인 노숙인을 강제로 전원하거나 퇴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소·퇴소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보다는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원 및 퇴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더라도 위원회가 강제 퇴소 또는 전원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법 제17조제5항⁷⁾에서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5조⁸⁾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5조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 제17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장래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①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입소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또한, 개정안은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⁹⁾를 두고 있는데,

안 제17조의2제3항의 경우, 폭행 또는 성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퇴소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폭행등이 발생한 날과 법 시행일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안 제17조의2제4항은 퇴소심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폭행 또는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퇴소심사에 관한 것이므로 적용시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작고, 안 제17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시행 규칙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법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23)

부 칙

제2조(노숙인복지시설 퇴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입·퇴소위원회의 설치는 재량규정으로 유지하고, 퇴소의 기준·방법·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 시설별, 지역별 입·퇴소 발생 빈도의 편차가 있어 입·퇴소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실질적인 운영 없이 형식적인 기구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대규모 시설의 경우 입·퇴소가 수시로 발생하여 상시로 입·퇴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입소 · 퇴소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	-------------------------------------

(2025.12.29. 기준)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위원 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7명
2	부산광역시	동래구	5명
3		해운대구	7명
4		사하구	6명
5	인천광역시	서구	6명
6	광주광역시	동구	5명
7	대전광역시	대덕구	6명
8	세종특별자치시	-	5명
9	경기도	동두천시	5명
10		양평군	3명
11		화성시	5명
12		가평군	5명
1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6명
14		강릉시	5명
15	충청북도	청주시	7명
16	전라남도	여수시	6명
17		순천시	5명
18		담양군	5명
19		해남군	6명
20	경상남도	창원	7명
21		진주	5명
22		사천	5명
23		의령	5명